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3. 3 선고 2020가단27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

담당변호사 우철

피 고 1. B

2. C

3. D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21. 2. 3

판결 선고 2021. 3. 3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 B 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. 9. 25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피고 C은 E에게 서울 북부 지방법원북부등기소 2019. 4. 2.
접수 제17832호, 제178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피고 D주식회사는 E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

북부등기소 2019. 5. 20. 접수 제26587호로 마친소유권이 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E을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를 하여 2018 . 11. 15. 서울북부지방법원(2017 가합 27864호) 에서 모은 원고에게 90, 378, 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. 1. 7.부터 2018 . 11. 15. 까지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 이 사건 부동산' 이라 한다) 에 관하여2017 . 9. 25.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. 10. 12. 접수 제 82645호로 피고B앞으로, 2019. 4. 2.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9. 4. 2. 접수제 17832호,제17833호로 피고 C 앞으로, 2019 . 5. 20. 신탁을 원인으로 2019 . 5. 20. 접수 제 26587호 로 피고 D 주식회사(변경 전: 주식회사 F)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E은 서울회생법원 2019 하단 2059 호, 2019 하면 2059 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2019. 8. 19. 파산선고를 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4호증,을가 제1,2호증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제406조에 따라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 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, 제396조).

파산 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 적 . 포괄적

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.

따라서 파산 선고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,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(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37141판결 참조).

E이 2019. 8. 19.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그이후인 2020. 2. 28.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, 이 사건소는 E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정윤아

별지